

---

#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

※ 본 시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2019학년도 모집요강(2018. 4.30.공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31(금)



아 주 대 학 교

# 《 목 차 》

## 주요 안내

입학정책 취지 및 방향 .....	1
주요변경사항 .....	2
지원자격, 전형요소, 제출서류 .....	3
전형방법 .....	7
학생부반영방법 .....	8
논술우수자전형 .....	9
수능반영방법 .....	10
지원자격 .....	11

# 2019학년도 입학전형 정책의 취지 및 방향

## I 2019학년도 입학전형 정책의 취지

### □ 전형별 선발 인재 명확화: 장기적 전형 안정화 목표

- 학생부교과: 고교 교과과정에 충실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준비가 어려운 학생 선발
- 학생부종합: 학교생활 전반 혹은 특정분야 활동 우수 학생 선발
- 논술: 논리적 사고 우수 학생 선발
- 수능: 학업 목표를 뚜렷이 하고 재도전하는 재수생 이상의 패자부활전 기회 부여

### □ 학문 융합 촉진

- 모집단위 통합: 계열별 모집 학칙개정이 전제
- 문·이과 통합 신입생 선발 기회 확대

### □ 사교육 영향력 최소화: 고교교육 내실화 지원

- 학생부위주 전형 선발 인원 75%, 논술 및 수능위주 전형 선발 인원 25% 유지
- 실기위주 특기자 전형 축소 및 폐지

### □ 기회균형 및 지역균형 제고

- 재학생의 성장배경 다양성 확대를 통한 학업 동기부여 촉진

### □ 입학사정관의 평가역량 제고

- 전임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영향력 확대

## II 2019학년도 입학전형 설계 방향

### □ 교육부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 및 대교협 [2019 대입전형기본사항] 준수

- 대입전형간소화 정책에 따른 전형 운영 (수시 4개 유형, 정시 2개 유형)
- 대입전형기본사항에 근거하여 전형방법, 전형요소 등에 대한 원칙 준수

### □ 2021학년도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신입생 대비 전형설계

- 학생부교과: 문·이과 교차지원 학과 운영
- 학생부종합: 문·이과 교차지원 가능 및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 □ 우리대학의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선발을 위한 전형설계

- 학생부종합 전형의 선발인원 확대 및 지원자격 개방성 확대
- 우리대학의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 선발 전형: 자기추천전형(2019학년도 다산인재전형)의 성격 변경

### □ 교육기회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정원내 (102명) 고른기회 전형 운영

- 정원내: 고른기회 I (농어촌, 특성화고, 기회균형, 국가보훈), 고른기회 II (사회기여, 사회배려)
- 정원외: 농어촌, 특성화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전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시 및 정시 모집 비율 유지(정원내,외포함): 1,826명(86.7%) : 279명(13.3%)</li> <li>② 교차전형 신설: 간호학과(10명), 금융공학과(10명)</li> <li>③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934명(44.3%) -&gt; 1,159명(55.1%)</li> <li>④ 다산인재전형 신설: 2018학년도 자기추천전형(과학우수인재+글로벌우수인재) 확대 : 다산형(茶山) 인재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li> <li>⑤ 서류종합평가 100% 전형 신설: 다산인재, 고른기회 I, 고른기회II</li> <li>⑥ 고교유형, 졸업연도에 따른 지원자격 대폭 확대</li> <li>⑦ 논술전형 선발인원 축소: 226명(10.7%)-&gt;221명(10.5%)</li> <li>⑧ 수능최저학력기준 전면 폐지 유지: 의학과(ACE전형, 논술우수자), 국방디지털융합학과(정시)제외</li> <li>⑨ 의학과 정시 가군 선발(다군-&gt;가군): (일괄합산) 수능 80 + 인성면접 20</li> </ul>																
학생부 교과 (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생부 교과 비율 상향: 70% -&gt; 80%(▲10%)</li> <li>② 교차전형 신설: 간호학과(10명), 금융공학과(10명)</li> <li>③ 학생부 비교과 정량화: 출결(10점), 봉사(10점) 반영</li> <li>④ 지역인재전형 폐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지역적 균형 제고</li> <li>⑤ 문·이과 교차지원학과 운영: 간호학과(인문), 금융공학과(자연)</li> </ul>																
수 시 (8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인원확대: 534명-&gt;611명(77명 증가)</li> <li>- 지원자격 확대: 삼수생 이내 제한 폐지, 국내고교졸업(예정)자 지원가능</li> </ul> </li> <li>② 다산인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10px 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50%;">인재상</th> <th style="width: 50%;">핵심역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    다산(茶山)형 인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융복합사고역량 실천적창의역량 의사소통역량 글로벌역량 소프트웨어역량</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격 확대: 수학/과학 및 외국어 교과목 이수단위 제한 폐지, 삼수생 이내 지원 제한 폐지, 국내·외 고교졸업(예정)자 지원가능</li> </ul> </li> <li>③ 서류종합평가 100% 전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산인재, 고른기회 I, 고른기회II</li> </ul> </li> <li>④ 고른기회전형의 정원내 신입생 선발: 총 102명(전체모집인원: 4.8%)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10px 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15%;">전형명</th> <th style="width: 15%;">모집인원</th> <th style="width: 70%;">지원자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른기회 I</td> <td style="text-align: center;">74</td> <td>                             ① 국가보훈자                              ② 농어촌고등학교                              ③ 특성화고등학교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른기회 II</td> <td style="text-align: center;">28</td> <td>                             ① 사회기여자: 민주화운동, 군부사관(직업군인), 경찰, 소방, 교정, 도서·벽지 공무원                              ② 사회배려자: (외)조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장애우 부모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자녀가구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otal</td> <td style="text-align: center;">102</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li> </ul>	인재상	핵심역량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    다산(茶山)형 인재	융복합사고역량 실천적창의역량 의사소통역량 글로벌역량 소프트웨어역량	전형명	모집인원	지원자격	고른기회 I	74	① 국가보훈자 ② 농어촌고등학교 ③ 특성화고등학교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고른기회 II	28	① 사회기여자: 민주화운동, 군부사관(직업군인), 경찰, 소방, 교정, 도서·벽지 공무원 ② 사회배려자: (외)조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장애우 부모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자녀가구	Total	102	-
인재상	핵심역량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    다산(茶山)형 인재	융복합사고역량 실천적창의역량 의사소통역량 글로벌역량 소프트웨어역량																
전형명	모집인원	지원자격															
고른기회 I	74	① 국가보훈자 ② 농어촌고등학교 ③ 특성화고등학교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고른기회 II	28	① 사회기여자: 민주화운동, 군부사관(직업군인), 경찰, 소방, 교정, 도서·벽지 공무원 ② 사회배려자: (외)조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장애우 부모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자녀가구															
Total	102	-															
논술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선발인원 축소(5명): 226명(10.7%)-&gt;221명(10.5%)</li> <li>② 논술반영비율 상향(10% 상향): 논술 80%(▲10%) + 학생부교과 20%(▼10%)</li> <li>③ 고교교사의 논술고사 출제합숙 참여: 2017학년도부터 실시(검증위원: 2015학년도부터 실시)</li> </ul>																
정시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학과 정시 가군 선발: (일괄합산) 수능 80 + 인성면접 20</li> <li>② 수학적능력시험 과목별 반영비율 조정: 계열별 국어, 수학, 과학의 반영비율 확대</li> <li>③ 영어과목 자체 변환점수 활용 유지: 기준점수 120점(등급별 감점), 4등급 이후 감점 폭 확대</li> <li>④ 한국사 수능총점 감점방식 적용: 1~4등급: 감점없음, 5등급 이상부터 감점</li> <li>⑤ SW특기자 정시 다군 선발(소프트웨어학과 10명): 수시-&gt; 정시로 이동</li> </ul>																

# 지원자격, 전형요소, 제출서류

## 1. 전형별 지원자격

구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학업 우수자 (교차포함)	농어촌 (정원외)	특성 학교 (정원외)	ACE	다산 인재	고른기회 I				고른 기회II					
						국가 보훈	농어촌	특성화	기회 균형						
모집인원(명)		356	51	27	611	291	74				28				
고학졸업 (예정) 자	학교유형	국내고	특 목 고	일반고	○	○	-	○	○	○	○	-	○	○	
				자율고	○	○	-	○	○	○	○	○	-	○	○
				과학고	○										
				외고											
				국제고	-		-	○	○	○	-	-		○	○
				영재고											
				예술고											
				체육고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	○	○	○	○	-	○	○	○	○
	인가대안학교	-	-	-	○	○	○	-	-	○	○	○	○		
	국외고	-	-	-	△	○	○	-	-	○	○	○	○		
	졸업 연도	2019. 2.		○	○	○	○	○	○	○	○	○	○		
		2017. 2. ~ 2018. 2.													
이전		-	-											-	-
검정고시		-	-	-	-	○	○	-	-	○	○	○			

구분	학생부종합				논술 우수자	실기 체육 우수자 (축구)	수능		실기 SW 특기 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수교육 대상자 (정원외)	특성화고등을 졸업한재직자 (정원외)	국방IT 우수 인재1 (정원외)			일반 전형 1,2	국방IT 우수 인재2 (정원외)					
모집인원(명)		20	10	105**	20	221	12	259	10	10			
고학졸업 (예정) 자	학교유형	국내고	특 목 고	일반고	○	○	-***	○	○	○	○	○	
				자율고	○	○	-	○	○	○	○	○	○
				과학고	○								
				외고									
				국제고	○	○	-	○	○	○	○	○	○
				영재고									
				예술고									
				체육고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	○	-	○	○	○	-	○
	인가대안학교	○	○	-		○	○	○		○			
	국외고	○	○	-	-	○	-	○	-	○			
	졸업 연도	2019. 2.		○	○	-	나이제한*	○	○	○	나이제한*	○	
		2017. 2. ~ 2018. 2.											
이전		○											
검정고시		○	○	-	-	○	○ (16. 1. 이후)	○	-	○			

\*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1995. 6. 2. ~ 2003. 6. 1. 사이 출생자)

\*\* : 정원내 1명, 정원외 104명을 선발 예정임

\*\*\* : 일반고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P16참조)

△ : 국외 일부교육과정 이수자는 지원 가능함

## 2. 전형별 전형요소

### 가. 학생부위주(교과, 종합)전형

구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학업우수자 (교차포함)	농어촌 (정원외)	특성화고 (정원외)	ACE	다산인재	고른기회 I	고른기회 II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정원외)	특수교육 대상자 (정원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정원외)	국방IT 우수인재1 (정원외)
모집인원(명)	356	51	27	611	291	74	28	20	10	105**	20
서류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	○	○	○	○	○	○	○	○	○
	자기소개서	-	-	-	○	○	○	○	○	○	○
	추천서	-	-	-	-	-	-	-	○	-	-
학교 생활 기록부	정성평가	-	-	-	○	○	○	○	○	○	○
	정량평가	○	○	○	-	-	-	-	-	-	-
면접 평가	서류확인· 인성면접	-	-	-	○	-	-	○	○	○	○
수능	최저학력기준	-	-	-	-	-	-	-	-	-	-

\*\*: 정원내 1명, 정원외 104명을 선발 예정임

### 나. 수능, 논술, 실기

구분	논술	실기	수능		실기	
	일반전형1(논술)	체육우수자(축구)	일반전형1 (의학과)	일반전형 2	국방IT우수 인재2 (정원외)	SW 특기자
모집인원(명)	221	12	10	249	10	10
학교생활 기록부	정성평가	-	-	-	-	○
	정량평가	○	○	-	-	-
논술고사	○	-	-	-	-	-
면접평가	서류확인· 인성면접	○	○(인성면접)	-	○	○
신체검사	-	-	-	-	○	-
실기고사	-	○	-	-	-	-
실적평가	-	○	-	-	-	-
수능최저학력기준	-	-	-	-	한국사3등급	-

## 3. 전형별 반영비율

구분	인원	단계	학교생활기록부	비고		
학생부 교과	학업우수자	336	일괄	교과: 80% + 비교과(정량평가:출결,봉사): 20%	-	
	학업우수자(교차)	20			-	
	정원 외	농어촌학생	51		일괄	의학과: 인성면접(P/F)
		특성화고졸업자	27			-

구분		인원	단계	학교생활 기록부	논술 고사	서류 평가	면접 평가	기타	비고	
학생부 종합	ACE	611	1단계	-	-	100%	-	-	1단계 3배수	
			2단계	-	-	70%	30%	-		
	다산인재	291	일괄	-	-	100%	-	-	-	
	고른기회 I	74	일괄	-	-	100%	-	-	-	
	고른기회 II	28	일괄	-	-	100%	-	-	-	
	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	20	1단계	-	-	100%	-	-	1단계 3배수
				2단계	-	-	70%	30%	-	
		특수교육대상자	10	1단계	-	-	100%	-	-	1단계 3배수
				2단계	-	-	70%	30%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재직자	105	1단계	-	-	100%	-	-	1단계 3배수
				2단계	-	-	70%	30%	-	
	국방IT우수인재1	20	1단계	-	-	100%	-	-	1단계 3배수	
2단계			-	-	70%	30%	-			
논술	논술우수자	221	일괄	교과: 20%	80%	-	-	-	-	
실기	체육우수자(축구)	12	일괄	교과: 15%	-	-	20%	실기: 25% 실적: 40%	모집단위: 스포츠레저학과	
수능	가군: 일반전형1 (의학과)	10	일괄	-	-	-	인성면접 20%	수능 80%	의학과만 선발	
	다군: 일반전형2	249	일괄	-	-	-	-	수능 100%	-	
	국방IT우수인재2 (정원외)	10	1단계	-	-	-	100%	-	1단계 5배수	
2단계			-	-	-	20%	수능 80% (한국사 3등급 이내)			
실기	SW특기자	10	1단계	-	-	100%	-	-	1단계 3배수	
			2단계	-	-	70%	30%	-		
Total		2,105	-	-	-	-	-	-	-	

※ 약학대학,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은 제외함

#### 4. 수능최저학력기준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전체 (의학과(ACE, 논술우수자)제외)	없음
의학과(ACE, 논술우수자)	의학과: 국어, 수학(가), 영어, 탐구(과탐) 등급의 합이 5 이내

※ 수능의 탐구영역은 2과목 등급의 평균을 적용함

#### 5. 전형별 제출서류

구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학업 우수자 (교차포함)	농어촌 (정원외)	특성 화고 (정원외)	ACE	다산인재	고른기회 I				고른 기회II
						국가보훈	농어촌	특성화고	기회균형	
모집인원(명)	356	51	27	611	291	74				28
학교생활기록부*	○	○	○	○	○	○	○	○	○	○
자기소개서**	-	-	-	○	○	○	○	○	○	○
추천서	-	-	-	-	-	-	-	-	-	-
지원자격별제출서류***	-	○	○	-	-	○	○	○	○	○
국외고 (해당자)	성적증명서	-	-	○	○	○	-	-	○	○
	졸업증명서	-	-	-	○	○	-	-	○	○
검정고시 (해당자)	합격증명서	-	-	-	○	○	-	-	○	○
	성적증명서	-	-	-	○	○	-	-	○	○

구분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수능			실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정원외)	특수교육 대상자 (정원외)	특성화고 등을졸업한 재직자	국방IT 우수인재 1 (정원외)	논술 우수자	체육우수자 (축구)	일반 전형 1	일반 전형 2	국방IT 우수 인재2 (정원외)	SW 특기자
모집인원	20	10	105	20	221	12	10	249	10	10
학교생활기록부*	○	○	○	○	○	○	○	○	○	○
자기소개서**	○	○	○	○	-	-	○	-	-	○
추천서	-	○	-	-	-	-	-	-	-	-
지원자격별제출서류***	○	○	○	○	-	○	-	-	○	○
국외고 (해당자)	성적증명서	○	○	-	○	-	○	○	-	○
	졸업증명서	○	○	-	○	-	○	○	-	○
검정고시 (해당자)	합격증명서	○	○	-	○	○	○	○	-	○
	성적증명서	○	○	-	○	○	○	○	-	○

\* : 인터넷 원서접수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 없음(미동의시 별도 제출해야 함)

\*\* : 인터넷 원서접수시 입력하며 별도제출 없음

\*\*\*: 각 지원자격별 제출 서류는 전형별 제출서류 참조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초본을 동봉하여 제출**

## 6. 전형별 전형요소 반영점수의 최고점 및 최저점

구분	전형명	전형요소	최고점	최저점
학생부종합	국방IT우수인재1 (정원외)	서류평가	70	0
		면접평가	30	0
논술	논술우수자	학생부교과	20	0
		논술고사	80	0
실기	체육우수자(축구)	학생부 교과	15	0
		실적평가	40	7
		실기평가	25	0
		면접평가	20	0

※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전형(ACE, 다산인재, 고른기회 I, 고른기회II,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은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전형 방법

시 기	유 형	전 형	모집인원	전형방법(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비 고	
수시 (86.7%)	학생부 교과 (20.6%)	고른기회	학업우수자	336	(일괄) 학생부 교과 80 + 비교과 20(정량평가:출결,봉사)  ※ 농어촌학생(의학과) : 인성면접(P/F)을 추가 실시함	없음	-
			학업우수자(교차)	20			
			농어촌학생(정원외)	54*			
			특성화고졸업자(정원외)	27			
	소계			434 (20.6%)			
	학생부 종합 (55.1%)	고른기회	ACE	611	(1단계) 서류종합평가 100(3배수)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전체(의학과제외) : 없음 의학과: 국어,수학(가),영어, 탐구(과탐)등급합 5 이내	1단계 3배수
			다산인재	291	(일괄) 서류종합평가 100	없음	-
			고른기회 I	74			
			고른기회 II	28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정원외)	23*	(1단계) 서류종합평가 100(3배수)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없음	1단계 3배수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10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재직자(정원내,외)	105**			
	국방IT우수인재1(정원외)	20	소계 1,159(55.1%)				
	논술 (10.5%)	논술우수자	221	(일괄) 논술 80 + 학생부 교과 20	의학과: 국어, 수학(가), 영어 탐구(과탐) 등급합 5 이내	-	
	실기 (0.6%)	체육우수자(축구)	12	(일괄) 학생부 교과 15 + 면접 20 + 실기 25 + 실적 40	없음	-	
재외 국민 특별 전형	전체(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34	(일괄) 수강능력시험 100	없음	모집 인원외 :면접 100		
	의학과	2	(1단계) 수강능력시험 100(10배수)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간호학과	1	(1단계) 수강능력시험 100(10배수) (2단계) 1단계 60 + 면접 40				
정시 (13.3%)	수능 (12.8%)	일반전형1	40*	(일괄) 수능 80 + 인·적성면접 20	없음	의학과 선발	
		일반전형2	249	(일괄) 수능 100		-	
		국방IT우수인재2	10	(1단계) 수능 100(5배수) (2단계) 1단계 80 + 면접 20	한국사 3등급 이내	수시미충 원사이원 선발	
	실기 (0.5%)	SW특기자	10	(1단계) 서류종합평가 100(3배수)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없음	1단계 3배수	
	수능 고른 기회	농어촌학생(정원외)	수시 미충원 선발	(일괄) 수능 100	없음	-	
		특성화고졸업자(정원외)					
학생부 종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정원외)	(일괄) 서류평가 70 + 면접 30	없음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정원외)						
소계			279 (13.3%)				
합계			2,178*	(2,105): 재외국민(37), 약학대학(36) 제외, 선발비율산정기준			

\* 약학대학 모집인원 36명 포함(일반전형 30명, 농어촌학생 3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명)

\*\* 경영계열 학과신설시 106명, 다산인재전형 경영계열 1명 감축 예정

※ 2017학년도 미등록 이월인원 2명 포함(건축학과 1명, 미디어콘텐츠전공 1명), 국방IT우수인재전형1: 수시 미충원시 정시 이월하여 선발

## 학생부 반영 방법

1. 대상 전형: 학생부교과(학업우수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 논술우수자, 체육우수자(축구)

2.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2018. 8.31일 기준

구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반영과목
자연계열 간호학과(자연) 금융공학과	20%	30%	30%	-	20%	반영교과 이수 전과목
인문계열 간호학과(인문) 스포츠레저학과	30%	20%	30%	20%	-	

- ※ 반영 학년별 해당 교과 이수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 해당 교과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함
- ※ 계열은 본교 모집단위의 계열을 의미하며, 해당 계열의 반영비율을 적용함
- ※ 유사 과목의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음

3. 학년별 반영비율 : **1학년 20%, 2~3학년 통합 80%**

대 상	인정범위
졸업(예정)자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조기졸업자	1학년 1학기 ~ 2학년 1학기

4. 학생부 등급점수(10점 만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0	9.9	9.8	9.5	9.0	8.5	7.5	6.5	0.0

5. 출결 및 봉사 점수(20점 만점): **학생부교과전형에 한함**

가. 출결: 10점

무단결석일수	0~3일	4~6일	7~9일	10~12일	13~16일	17~19일	20일 이상
점수	10.0	9.5	8.5	7.0	5.0	3.0	0.0

※ 결석일수는 무단결석만 해당함(졸업(예정)자: 3-1학기까지만 적용하며, 조기졸업자: 2-1학기까지 적용)

나. 봉사: 10점

봉사시간	20시간 이상	18~19 시간	16~17 시간	14~15 시간	12~13 시간	10~11 시간	8~9 시간	6~7 시간	4~5 시간	3시간 이하
점수	10	9.5	9.0	8.5	8.0	7.5	7.0	6.5	6.0	5.0

※ 봉사시간: 학교생활기록부에 표기된 봉사시간을 의미함  
(졸업(예정)자: 3-1학기까지만 적용하며, 조기졸업자: 2-1학기까지 적용)

6. 성적 산출방법

◆ 총점(100점 기준)

$$= \{ 1\text{학년}[\sum(\text{교과별 평균등급점수} \times \text{교과별 반영비율})] \times 0.2 + 2\sim 3\text{학년}[\sum(\text{교과별 평균등급점수} \times \text{교과별 반영비율})] \times 0.8 \} \times 10$$

$$* \text{교과별 평균등급점수} = \frac{\sum(\text{과목별 이수단위} \times \text{등급점수})}{\sum(\text{과목별 이수단위})}$$

# 논술 우수자

## 1.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전형방법

전형명	논술	학생부 교과	반영단계
논술우수자	80%	20%	일괄

※ 1. 학생부교과: 학생부반영방법과 동일함(p8)

### 2. 비교내신 기준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 등 학생부가 없거나 학생부 과목별 등급산출이 불가능한 자의 경우 논술고사 성적을 활용하여 비교내신 성적 산출

## 3. 논술 유형, 출제경향

계열	출제경향
자연계열 [수리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리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li> <li>-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의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다양한 수학적 주제를 다룸</li> <li>- 답이 틀려도 풀이과정이 옳으면 상당한 부분점수를 부여함</li> <li>- 공식을 암기하여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음</li> <li>-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음</li> </ul>
의학과 [수리논술 + 과학논술(생명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리논술: 수리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li> <li>- 과학논술: 자연과학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li> <li>- 답이 틀려도 풀이과정이 옳으면 상당한 부분점수를 받을 수 있음</li> <li>- 공식을 암기하여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음</li> <li>-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음</li> </ul>
인문계열 [통합논술(언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출제</li> <li>- 요약형 혹은 비교·대조형 문제와 통합형 문제 출제</li> <li>- 요약형 문제의 경우 수험생 본인의 의견을 더하지 않고 제시문에서 소주제문들을 간추려 한 편의 글이 되도록 요약하는 능력을 측정</li> <li>- 비교·대조형 문제의 경우 제시문들의 주제나 논점을 중심으로 그 유사점·차이점을 한 편의 글이 되도록 기술하는 능력을 측정</li> <li>- 통합형 문제의 경우 3~5개의 독립된 제시문들을 주고 그 지문들을 서로 연결하는 논리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제시문들은 인문/사회분야를 비롯한 범교과 과정에서 골고루 취함)</li> <li>-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음</li> </ul>

## 4. 시험시간: 120분

## 수능 반영 방법

1.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군	전형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가	나		과탐	사탐
가	일반전형1	의학과	15%	40%	-	10%	35%	-
다	일반전형2	자연계열 (의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제외)	15%	40%	-	20%	25%	-
		경영대학(경영,e-비즈,금융)	25%	-	40%	20%	-	15%
		영어영문학과,문화콘텐츠학과 행정학과	35%	-	25%	20%	-	20%
	국방IT우수 인재2	국방디지털융합학과	15%	40%	-	10%	35%	-

※ 정시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모집단위는 수시 미충원으로 인한 정시 이월인원이 발생할 경우 정시에서 선발할 수 있음

2. 수능 성적 활용지표

가. 수능성적 반영방법

국어·수학	영 어	탐 구	한국사
표준점수	자체 변환점수	백분위점수 <small>(두과목의 백분위 평균)</small>	감점방식

나. 영어 과목 변환점수: 아래 표의 환산방식에 따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변환점수(10%)	120	118	116	114	110	100	90	80	70
변환점수(20%)	120	116	112	108	100	80	60	40	20

다. 한국사 과목 반영점수표: 한국사 수능 등급별 일정 점수를 수능총점에 반영(감점 방식)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점수	감점없음				-0.1	-0.2	-0.4	-0.8	-1.0

## 지 원 자 격

### 1. 학생부교과(수시)

유 형	전 형	지 원 자 격					
학생부 교과	학업우수자	2017년 2월 이후(2월 포함)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전 학기를 모두 이수한 자(조기졸업자는 지원 불가함) ※ <b>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만 해당)만 지원 가능함</b>					
	학업우수자 (교차)	2017년 2월 이후(2월 포함)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로서 <가>또는 <나>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 <b>국내 일반고, 자율고만 지원 가능함</b>					
	농어촌학생 (정원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3d3d3;"> <th style="width: 10%;">유 형</th> <th style="width: 10%;">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td> <td>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b>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하는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td> <td>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b>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td> </tr> </tbody> </table> <p>※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학교 이어야 함</p> <p>※ 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부·모·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p> <p>※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함</p> <p>※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의 특수목적고, 특성화고(일반고의 전문계학과 출신자 포함), 대안학교(인가,비인가), 국외고, 검정고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p> <p>※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재학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재학)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p>	유 형	내 용	가	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b>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 하는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나
유 형	내 용						
가	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b>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 하는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나	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b>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 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특성화고 졸업자 (정원외)	<p>2017년 2월 이후(2월 포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lt;가&gt; 또는 &lt;나&gt;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3d3d3;"> <th style="width: 10%;">유 형</th> <th style="width: 10%;">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td> <td>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 <b>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고른기회 I의 특성화고교 지원자격 참조</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td> <td>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td> </tr> </tbody> </table> <p>※ 특성화고등학교(또는 일반계고 중 종합고의 전문계학과)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당해연도 3월 31일 이내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전입한 자는 인정함)는 지원 가능함</p> <p>※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자는 특성화고교졸업자를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p>	유 형	내 용	가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 <b>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고른기회 I의 특성화고교 지원자격 참조</b>	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유 형	내 용						
가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 <b>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고른기회 I의 특성화고교 지원자격 참조</b>						
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2. 학생부종합(수시)

유형	전형	지원자격														
	ACE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 <b>검정고시, 국외고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국외고 일부 교육과정 이수자는 지원 가능)</b>														
	다산인재 (신설)	<p>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교의 인재상인 다산(茶山)형 인재의 핵심역량에 강점이 있는 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인재상</th> <th>핵심역량</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    다산(茶山)형 인재</td> <td>융복합 사고역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가지 특정 지식이나 학문적 경계를 구분 짓지 않는 사고 전환 능력</li> <li>인문적 통찰력과 영역을 넘나드는 통섭적 사고 능력</li> </ul> </td> </tr> <tr> <td>실천적 창의역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해결을 위해 깊이 있는 과학적 사고력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li> <li>변화적응력, 실천력</li> </ul> </td> </tr> <tr> <td>의사소통 역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방을 이해하며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개진할 수 있는 능력</li> <li>상호존중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li> </ul> </td> </tr> <tr> <td>글로벌 역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적 상황에 개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li> <li>시계시민으로서 리더십을 갖추고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li> </ul> </td> </tr> <tr> <td>소프트웨어역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li> <li>소프트웨어 기술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li> </ul> </td> </tr> </tbody> </table>	인재상	핵심역량	내용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    다산(茶山)형 인재	융복합 사고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가지 특정 지식이나 학문적 경계를 구분 짓지 않는 사고 전환 능력</li> <li>인문적 통찰력과 영역을 넘나드는 통섭적 사고 능력</li> </ul>	실천적 창의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해결을 위해 깊이 있는 과학적 사고력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li> <li>변화적응력, 실천력</li> </ul>	의사소통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방을 이해하며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개진할 수 있는 능력</li> <li>상호존중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li> </ul>	글로벌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적 상황에 개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li> <li>시계시민으로서 리더십을 갖추고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li> </ul>	소프트웨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li> <li>소프트웨어 기술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li> </ul>
인재상	핵심역량	내용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    다산(茶山)형 인재	융복합 사고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가지 특정 지식이나 학문적 경계를 구분 짓지 않는 사고 전환 능력</li> <li>인문적 통찰력과 영역을 넘나드는 통섭적 사고 능력</li> </ul>														
	실천적 창의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해결을 위해 깊이 있는 과학적 사고력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li> <li>변화적응력, 실천력</li> </ul>														
	의사소통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방을 이해하며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개진할 수 있는 능력</li> <li>상호존중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li> </ul>														
	글로벌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적 상황에 개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li> <li>시계시민으로서 리더십을 갖추고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li> </ul>														
	소프트웨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li> <li>소프트웨어 기술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li> </ul>														
학생부 종합		<p>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 항목에서 규정한 세부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자격</th> <th>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국가보훈 대상자</td> <td> <p>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본인 및 그의 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포함)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수당지급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훈보상(순직) 군경, 보훈보상(순직) 공무원</p> </td> </tr> <tr> <td rowspan="3">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출신자</td> <td> <p>&lt;가&gt; 또는 &lt;나&gt;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 <p>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p> <p>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b>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하는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p> </td> </tr> <tr> <td>나</td> <td> <p>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p> <p>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b>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p>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colspan="2"> <p>※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학교이어야 함</p> <p>※ 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부·모·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p> <p>※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함</p> </td> </tr> </tbody> </table>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국가보훈 대상자	<p>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본인 및 그의 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포함)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수당지급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훈보상(순직) 군경, 보훈보상(순직) 공무원</p>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출신자	<p>&lt;가&gt; 또는 &lt;나&gt;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 <p>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p> <p>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b>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하는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p> </td> </tr> <tr> <td>나</td> <td> <p>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p> <p>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b>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p> </td> </tr> </tbody> </table>	유형	내용	가	<p>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p> <p>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b>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하는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p>	나	<p>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p> <p>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b>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p>	<p>※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학교이어야 함</p> <p>※ 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부·모·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p> <p>※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함</p>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국가보훈 대상자	<p>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본인 및 그의 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포함)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수당지급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훈보상(순직) 군경, 보훈보상(순직) 공무원</p>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출신자	<p>&lt;가&gt; 또는 &lt;나&gt;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 <p>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p> <p>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b>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하는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p> </td> </tr> <tr> <td>나</td> <td> <p>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p> <p>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b>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p> </td> </tr> </tbody> </table>	유형	내용	가	<p>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p> <p>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b>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하는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p>	나	<p>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p> <p>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b>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p>									
	유형	내용														
	가	<p>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p> <p>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b>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하는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p>														
나	<p>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p> <p>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b>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p>															
<p>※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학교이어야 함</p> <p>※ 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부·모·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p> <p>※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함</p>																
	고른기회 I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유형	전형	지원자격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I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자격</th> <th>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b>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출신자</b> </td> <td>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의 특수목적고, 특성화고(일반고의 전문계학과 출신자 포함), 대안학교(인가,비인가), 국외고, 검정고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재학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재학)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td> </tr> <tr> <td colspan="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lt;가&gt; 또는 &lt;나&gt;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td> </tr> <tr> <td colspan="2">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td> </tr> <tr> <td>나</td> <td>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colspan="2"> <table border="1"> <thead> <tr> <th>모집단위</th> <th>계열</th> <th>고교 기준학과</th> </tr> </thead> <tbody> <tr> <td>공과대학</td> <td>공업계열</td> <td>건축(디자인)과, 공업화학과, 금속재료과, 금형설계제작과, (동력)기계과, 농경(업)기계과, 생명공학기술과, 생물공학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응용(학)과, (농업)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향만물류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td> </tr> <tr> <td>정보통신대학</td> <td>공업계열</td> <td>디자인콘텐츠과, (e-)디지털(문화)콘텐츠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콘텐츠)과, 모바일콘텐츠과, 방송콘텐츠과, 영상제작과, 영상콘텐츠과, 웹콘텐츠(디자인)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전기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자과, 전자계산기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정보통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구조과, 컴퓨터응용(학)과, 콘텐츠개발과, 통신과, 항공과</td> </tr> <tr> <td>경영학과</td> <td>상업·정보계열</td> <td>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디지털콘텐츠마케팅과, 무역정보과, 문화콘텐츠(마케팅)과, (e-)비즈니스콘텐츠과, 상업디자인과, 유통경영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창업콘텐츠과, 콘텐츠개발과, 향만물류과, 회계정보과</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colspan="2">                     ※ 특성화고등학교(또는 일반계고 중 종합고의 전문계학과)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당해연도 3월 31일 이내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전입한 자는 인정함)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자는 특성화고교졸업자를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 특성화고교 출신자 지원자격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I)의 모집인원이 있는 모집단위 중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경영학과만 지원할 수 있음                 </td> </tr> <tr> <td colspan="2">                     &lt;가&gt;또는 &lt;나&gt;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td> </tr> <tr> <td colspan="2">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td> </tr> <tr> <td>나</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colspan="2"> <b>기회균형 선발 대상자</b> </td> </tr> <tr> <td colspan="2">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해당 가구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에 따른 증명서 외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등을 추가 제출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는 지원할 수 없음(단,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관련 법령개정시, 지원자격 인정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td> </tr> </tbody> </table>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b>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출신자</b>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의 특수목적고, 특성화고(일반고의 전문계학과 출신자 포함), 대안학교(인가,비인가), 국외고, 검정고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재학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재학)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가> 또는 <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td> </tr> <tr> <td>나</td> <td>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td> </tr> </tbody> </table>		유형	내용	가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table border="1"> <thead> <tr> <th>모집단위</th> <th>계열</th> <th>고교 기준학과</th> </tr> </thead> <tbody> <tr> <td>공과대학</td> <td>공업계열</td> <td>건축(디자인)과, 공업화학과, 금속재료과, 금형설계제작과, (동력)기계과, 농경(업)기계과, 생명공학기술과, 생물공학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응용(학)과, (농업)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향만물류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td> </tr> <tr> <td>정보통신대학</td> <td>공업계열</td> <td>디자인콘텐츠과, (e-)디지털(문화)콘텐츠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콘텐츠)과, 모바일콘텐츠과, 방송콘텐츠과, 영상제작과, 영상콘텐츠과, 웹콘텐츠(디자인)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전기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자과, 전자계산기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정보통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구조과, 컴퓨터응용(학)과, 콘텐츠개발과, 통신과, 항공과</td> </tr> <tr> <td>경영학과</td> <td>상업·정보계열</td> <td>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디지털콘텐츠마케팅과, 무역정보과, 문화콘텐츠(마케팅)과, (e-)비즈니스콘텐츠과, 상업디자인과, 유통경영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창업콘텐츠과, 콘텐츠개발과, 향만물류과, 회계정보과</td> </tr> </tbody> </table>		모집단위	계열	고교 기준학과	공과대학	공업계열	건축(디자인)과, 공업화학과, 금속재료과, 금형설계제작과, (동력)기계과, 농경(업)기계과, 생명공학기술과, 생물공학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응용(학)과, (농업)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향만물류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정보통신대학	공업계열	디자인콘텐츠과, (e-)디지털(문화)콘텐츠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콘텐츠)과, 모바일콘텐츠과, 방송콘텐츠과, 영상제작과, 영상콘텐츠과, 웹콘텐츠(디자인)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전기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자과, 전자계산기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정보통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구조과, 컴퓨터응용(학)과, 콘텐츠개발과, 통신과, 항공과	경영학과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디지털콘텐츠마케팅과, 무역정보과, 문화콘텐츠(마케팅)과, (e-)비즈니스콘텐츠과, 상업디자인과, 유통경영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창업콘텐츠과, 콘텐츠개발과, 향만물류과, 회계정보과	※ 특성화고등학교(또는 일반계고 중 종합고의 전문계학과)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당해연도 3월 31일 이내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전입한 자는 인정함)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자는 특성화고교졸업자를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 특성화고교 출신자 지원자격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I)의 모집인원이 있는 모집단위 중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경영학과만 지원할 수 있음		<가>또는 <나>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td> </tr> <tr> <td>나</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td> </tr> </tbody> </table>		유형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b>기회균형 선발 대상자</b>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해당 가구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에 따른 증명서 외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등을 추가 제출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는 지원할 수 없음(단,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관련 법령개정시, 지원자격 인정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b>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출신자</b>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의 특수목적고, 특성화고(일반고의 전문계학과 출신자 포함), 대안학교(인가,비인가), 국외고, 검정고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재학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재학)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가> 또는 <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td> </tr> <tr> <td>나</td> <td>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td> </tr> </tbody> </table>		유형	내용	가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유형	내용																																											
		가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table border="1"> <thead> <tr> <th>모집단위</th> <th>계열</th> <th>고교 기준학과</th> </tr> </thead> <tbody> <tr> <td>공과대학</td> <td>공업계열</td> <td>건축(디자인)과, 공업화학과, 금속재료과, 금형설계제작과, (동력)기계과, 농경(업)기계과, 생명공학기술과, 생물공학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응용(학)과, (농업)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향만물류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td> </tr> <tr> <td>정보통신대학</td> <td>공업계열</td> <td>디자인콘텐츠과, (e-)디지털(문화)콘텐츠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콘텐츠)과, 모바일콘텐츠과, 방송콘텐츠과, 영상제작과, 영상콘텐츠과, 웹콘텐츠(디자인)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전기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자과, 전자계산기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정보통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구조과, 컴퓨터응용(학)과, 콘텐츠개발과, 통신과, 항공과</td> </tr> <tr> <td>경영학과</td> <td>상업·정보계열</td> <td>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디지털콘텐츠마케팅과, 무역정보과, 문화콘텐츠(마케팅)과, (e-)비즈니스콘텐츠과, 상업디자인과, 유통경영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창업콘텐츠과, 콘텐츠개발과, 향만물류과, 회계정보과</td> </tr> </tbody> </table>		모집단위	계열	고교 기준학과	공과대학	공업계열	건축(디자인)과, 공업화학과, 금속재료과, 금형설계제작과, (동력)기계과, 농경(업)기계과, 생명공학기술과, 생물공학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응용(학)과, (농업)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향만물류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정보통신대학	공업계열	디자인콘텐츠과, (e-)디지털(문화)콘텐츠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콘텐츠)과, 모바일콘텐츠과, 방송콘텐츠과, 영상제작과, 영상콘텐츠과, 웹콘텐츠(디자인)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전기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자과, 전자계산기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정보통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구조과, 컴퓨터응용(학)과, 콘텐츠개발과, 통신과, 항공과	경영학과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디지털콘텐츠마케팅과, 무역정보과, 문화콘텐츠(마케팅)과, (e-)비즈니스콘텐츠과, 상업디자인과, 유통경영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창업콘텐츠과, 콘텐츠개발과, 향만물류과, 회계정보과																															
		모집단위	계열	고교 기준학과																																										
공과대학	공업계열	건축(디자인)과, 공업화학과, 금속재료과, 금형설계제작과, (동력)기계과, 농경(업)기계과, 생명공학기술과, 생물공학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응용(학)과, (농업)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향만물류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정보통신대학	공업계열	디자인콘텐츠과, (e-)디지털(문화)콘텐츠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콘텐츠)과, 모바일콘텐츠과, 방송콘텐츠과, 영상제작과, 영상콘텐츠과, 웹콘텐츠(디자인)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전기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자과, 전자계산기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정보통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구조과, 컴퓨터응용(학)과, 콘텐츠개발과, 통신과, 항공과																																												
경영학과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디지털콘텐츠마케팅과, 무역정보과, 문화콘텐츠(마케팅)과, (e-)비즈니스콘텐츠과, 상업디자인과, 유통경영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창업콘텐츠과, 콘텐츠개발과, 향만물류과, 회계정보과																																												
※ 특성화고등학교(또는 일반계고 중 종합고의 전문계학과)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당해연도 3월 31일 이내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전입한 자는 인정함)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자는 특성화고교졸업자를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 특성화고교 출신자 지원자격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I)의 모집인원이 있는 모집단위 중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경영학과만 지원할 수 있음																																														
<가>또는 <나>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td> </tr> <tr> <td>나</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td> </tr> </tbody> </table>		유형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유형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b>기회균형 선발 대상자</b>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해당 가구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에 따른 증명서 외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등을 추가 제출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는 지원할 수 없음(단,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관련 법령개정시, 지원자격 인정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유형	전형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고른기회Ⅱ	<p>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 항목에서 규정한 세부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자격</th> <th>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사회 기여자</td> <td> <p>&lt;가&gt;~&lt;바&gt;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lt;가&gt;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증서를 교부받은 자)의 자녀                      &lt;나&gt;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lt;다&gt; 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lt;라&gt;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lt;마&gt; 교정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lt;바&gt;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지역 구분 중 가~다 지역에 소재하는 근무지에서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 기간 중 통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근무자의 직종은 행정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교정직 공무원만 해당함</p> </td> </tr> <tr> <td>사회 배려자</td> <td> <p>&lt;가&gt;~&lt;마&gt;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lt;가&gt;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단,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음)                      &lt;나&gt; 소년·소녀가정의 자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수형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자                      &lt;다&gt; 아동복지시설출신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받는 자                      &lt;라&gt; 장애우 부모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lt;마&gt; 다문화 가정의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의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p> </td> </tr> <tr> <td>다자녀가구</td> <td>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출신 자녀</td> </tr> </tbody> </table>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사회 기여자	<p>&lt;가&gt;~&lt;바&gt;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lt;가&gt;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증서를 교부받은 자)의 자녀                      &lt;나&gt;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lt;다&gt; 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lt;라&gt;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lt;마&gt; 교정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lt;바&gt;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지역 구분 중 가~다 지역에 소재하는 근무지에서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 기간 중 통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근무자의 직종은 행정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교정직 공무원만 해당함</p>	사회 배려자	<p>&lt;가&gt;~&lt;마&gt;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lt;가&gt;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단,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음)                      &lt;나&gt; 소년·소녀가정의 자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수형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자                      &lt;다&gt; 아동복지시설출신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받는 자                      &lt;라&gt; 장애우 부모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lt;마&gt; 다문화 가정의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의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p>	다자녀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출신 자녀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사회 기여자	<p>&lt;가&gt;~&lt;바&gt;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lt;가&gt;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증서를 교부받은 자)의 자녀                      &lt;나&gt;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lt;다&gt; 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lt;라&gt;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lt;마&gt; 교정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lt;바&gt;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지역 구분 중 가~다 지역에 소재하는 근무지에서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 기간 중 통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근무자의 직종은 행정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교정직 공무원만 해당함</p>							
		사회 배려자	<p>&lt;가&gt;~&lt;마&gt;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lt;가&gt;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단,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음)                      &lt;나&gt; 소년·소녀가정의 자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수형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자                      &lt;다&gt; 아동복지시설출신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받는 자                      &lt;라&gt; 장애우 부모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lt;마&gt; 다문화 가정의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의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p>							
다자녀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출신 자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p>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lt;가&gt; 또는 &lt;나&gt;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td> </tr> <tr> <td>나</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td> </tr> </tbody> </table> <p>※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해당 가구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에 따른 증명서 외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등을 추가 제출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는 지원할 수 없음(단,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관련 법령개정시, 지원자격인정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p>	유형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유형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정원외)	<p>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3급 해당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p>									



###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유형	전형	지원자격				
학생부 종합	국방IT우수 인재1 (정원외)	<p>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과학(영재)고,외고,국제고만 해당)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전 학기를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b>조기졸업자는 지원불가함</b></p> <p>가.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019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td> <td>2023. 6. 1.(1995. 6. 2. ~ 2003. 6. 1. 사이 출생자)</td> </tr> </tbody> </table> <p>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②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⑦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p> <p>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자(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친권자 동의 및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                  라. 초중등교육법(2조, 4장 6절) 및 동법 시행령(4장 5절)에 규정된 특수학교,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예술계열 고등학교, 체육계열 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직업형, 체험형, 대안학교형), 종합고의 전문계학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외국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요건 해당자는 지원할 수 없음</p>	구분	내용	2019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2023. 6. 1.(1995. 6. 2. ~ 2003. 6. 1. 사이 출생자)
		구분	내용			
2019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2023. 6. 1.(1995. 6. 2. ~ 2003. 6. 1. 사이 출생자)					

### 3. 논술 및 실기(수시)

유형	전형	지원자격
논술	논술우수자	<p>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p>
실기	체육우수자 (축구)	<p>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년 ~ 2018년 청소년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국내·외 대회에 선발 및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함(단순 소집 제외)</li> </ul> </li> <li>2016년 ~ 2018년 전국대회 4강 이내 입상자</li> <li>2016년 ~ 2018년 고등리그 왕중왕전, K리그 U18 챔피언십 8강 이내 입상자</li> <li>2016년 ~ 2018년 고등 축구리그 대회 권역별 리그 순위 2위 이내 입상자 또는 K리그 주니어 리그 순위 6위 이내 입상자</li> </ol> <p>※ 단, 위 2), 3), 4)번 조건의 해당 기간 중 경기실적평가에 반영되는 대회(또는 리그) 가운데 최소한 1개의 대회(또는 리그)에서 1학년 때는 소속팀 출전경기 시간의 30% 이상, 2학년 때는 40% 이상, 3학년 때는 50% 이상 출전해야 함</p> <p>※ 포지션별 인원: FW(5명 이내), MF(5명 이내), DF(5명 이내), GK(2명 이내) 선발(단, 포지션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할 수 있음)</p>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유형	전형	지원자격				
학생부 종합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정원내,외)	<p>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재직자 (2019년 3월 1일 기준)(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p> <p>가.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p> <p>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p> <p>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p> <p>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lt;산업체 재직기간, 인정범위 유의사항&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389 981 491 1061">구분</th> <th data-bbox="491 981 1484 1061">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89 1061 491 170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b>재직기간</b></td> <td data-bbox="491 1061 1484 170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인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12개월은 1년으로, 30일은 1개월로 각각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li> <li>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며, 재직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li> <li>다) 재직기간이 중복된 경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li> <li>라) 현 직장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이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 범위 내에 있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li> </ol> </li> <li>2)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함</li> <li>3) 고등학교 졸업일 전에 산업체에 근무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li> <li>4)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원서접수일은 모집요강공지)</li> <li>5) 병역특례기간 동안의 산업체 경력, 직업 군인, 의무 복무 등의 근무경로도 재직기간으로 인정</li> </ol> </td> </tr> <tr> <td data-bbox="389 1704 491 2080"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b>산업체 인정범위</b></td> <td data-bbox="491 1704 1484 208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li> <li>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li> <li>3)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li> </ol> <p>※ 단, 4대 보험 개인(지역)가입자는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음</p>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b>재직기간</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인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12개월은 1년으로, 30일은 1개월로 각각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li> <li>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며, 재직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li> <li>다) 재직기간이 중복된 경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li> <li>라) 현 직장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이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 범위 내에 있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li> </ol> </li> <li>2)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함</li> <li>3) 고등학교 졸업일 전에 산업체에 근무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li> <li>4)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원서접수일은 모집요강공지)</li> <li>5) 병역특례기간 동안의 산업체 경력, 직업 군인, 의무 복무 등의 근무경로도 재직기간으로 인정</li> </ol>
구분	내용					
<b>재직기간</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인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12개월은 1년으로, 30일은 1개월로 각각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li> <li>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며, 재직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li> <li>다) 재직기간이 중복된 경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li> <li>라) 현 직장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이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 범위 내에 있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li> </ol> </li> <li>2)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함</li> <li>3) 고등학교 졸업일 전에 산업체에 근무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li> <li>4)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원서접수일은 모집요강공지)</li> <li>5) 병역특례기간 동안의 산업체 경력, 직업 군인, 의무 복무 등의 근무경로도 재직기간으로 인정</li> </ol>					
<b>산업체 인정범위</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li> <li>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li> <li>3)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li> </ol> <p>※ 단, 4대 보험 개인(지역)가입자는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음</p>					

##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 4. 정시: 일반전형 1,2, 국방IT우수인재전형2, SW특기자

유형	전형	지원자격						
정시	일반전형 1,2	<p>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p> <p>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조기졸업자 포함] 및 2019년 2월 졸업예정자</p> <p>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p> <p>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p> <p>※ 해당 전형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성적이 없거나 지정한 유형과 다르게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함(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p> <p>※ 정시 일반전형 최초 모집인원이 없는 학과(전공)의 경우, 수시 미등록자 및 환불인원이 발생할 경우 정시 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할 수 있음</p>						
	국방IT우수 인재2 (정원외)	<p>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과학(영재)고, 외교, 국제고만 해당)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p> <p>가.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019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td> <td>2023. 6. 1.(1995. 6. 2. ~ 2003. 6. 1. 사이 출생자)</td> </tr> <tr> <td>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2항</td> <td>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②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⑦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td> </tr> </tbody> </table> <p>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자(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p> <p>다. 친권자 동의 및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p> <p>※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p> <p>라. 초중등교육법(2조, 4장 6절) 및 동법 시행령(4장 5절)에 규정된 특수학교,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예술계열 고등학교, 체육계열 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직업형, 체험형, 대안학교형), 종합고의 전문계학과, 방송통신 고등학교, 외국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요건 해당자는 지원할 수 없음</p> <p>마. 해당 전형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성적이 없거나 지정한 유형과 다르게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함(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p>	구분	내용	2019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2023. 6. 1.(1995. 6. 2. ~ 2003. 6. 1. 사이 출생자)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2항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②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⑦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구분	내용						
2019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2023. 6. 1.(1995. 6. 2. ~ 2003. 6. 1. 사이 출생자)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2항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②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⑦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SW특기자	<p>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p> <p>가. 정보올림피아드(국제대회(IOI) 및 한국대회(KOI)) 수상실적자</p> <p>나. 전국 규모의 SW 관련 경진대회 수상실적자</p> <p>다. SW 분야에 특기가 있는 자</p>							

※ 농어촌, 특성화, 기회균형, 국방IT우수인재1,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은 수시 미충원시 정시에서 이월하여 선발예정임